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3. 23.
사회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 가. 제출일자: 2022년 3월 10일
- 나. 발 의 자: 김길자 의원 외 4명
- 다. 회부일자: 2022년 3월 18일
- 라. 상정일자: 제23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2. 3. 2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길자 의원)

- 가. 제안이유
 -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어울려 즐겁게 놀 수 있는 통합놀이터를 조성하여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통합놀이터 정의 조항 신설 등(안 제2조)
 - 통합놀이터 설치가능 조항 신설(안 제4조)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원배)

○ 본 조례안은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어울려 즐겁게 놀 수 있는 통합놀이터를 조성하여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은

- 안 제2조에서는 ‘어린이공원’ 정의의 근거 조문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통합놀이터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였고,
- 안 제4조에서는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이 되도록 통합놀이터 설치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음.

○ 본 조례안은 장애·비장애 어린이가 하나되어 함께 어울려 뛰어 놀 수 있는 통합놀이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통합놀이터 정의와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통합놀이터는 장애 어린이와 비장애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어린이가 자유롭고 동등하게 어울려 소통하면서 놀 권리를 실현해 가는 공간이며, 장애·비장애 경계 없이 누구나 물리적 제약을 느끼지 않고 차별과 편견 없이 어린이들에게 창의력을 발휘하며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놀이의 장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규정되었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길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77
----------	-----

발의년월일: 2022년 3월 일

발 의 자: 김길자 의원 외 3명

1. 제안이유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어울려 즐겁게 놀 수 있는 통합놀이터를 조성하여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합놀이터 정의 조항 신설 등(안 제2조)

나. 통합놀이터 설치가능 조항 신설(안 제4조)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2. 3. 8. ~ 3. 14.):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나목”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통합놀이터”란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없이 모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기구를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및 어린이놀이터의”를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
호 중 “각종시설”을 “각종 시설”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구청장은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
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이 되도록 통합놀이
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중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공원 등”으로, “범위
안에서 지원 할”을 “범위에서 지원할”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확보하여야한다”를 “확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p> <p>2.·3. (생략)</p> <p><u><신설></u></p>	<p>제2조(정의) ----- -----.</p> <p>1.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 ----- -----.</p> <p>2.·3. (현행과 같음)</p> <p>4. “통합놀이터”란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없이 모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말한다.</p>
<p>제4조(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2. (생략)</p> <p>3. 어린이공원 등의 <u>각종시설</u> 및 위생 점검 지도</p>	<p>제4조(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 ----- ----- ----- -----.</p> <p>②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u>각종 시설</u> -----</p>

4. ~ 8. (생략)

③ (생략)

<신설>

제8조(자원봉사활동 등) 구청장은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예산확보·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지원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4. ~ 8.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이 되도록 통합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활동 등) -----
어린이공원 등-----

----- 범위
에서 지원할 -----.

제9조(예산확보·지원) ① -----

---- 확보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시행규칙) -----
-- 필요한 -----
-----.